

삼척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995년 11월 8일

의회운영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10월 24일 전세영 의원 외 6인 발의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10월 24일

다. 심사일자 : 제9회 삼척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('95.11.8) 심사 의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('95. 7. 1 대통령령 제14703호)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제2대 의회의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함.

나. 개정조례안 주요골자

○ 조례안 제명을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.

○ 종전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, 의정활동비, 회의수당,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.

- 의원에게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신설하고,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일비를 지급하던 것을,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때만 지급토록 함.
- 종전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 출석일수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함.
-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, 공무로 여행하는때에만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함.
- 부칙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, 적용은 제2대 의회가 출범한 '95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개정함.

다.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 : 별첨

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전세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